

# 목 차

참 고 서 류 .....	1
I. 권유자·대리인·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	2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2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	2
3. 피권유자의 범위 .....	2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2
5. 기타 사항 .....	3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3
□ 재무제표의 승인 .....	3
□ 정관의 변경 .....	82
□ 이사의 선임 .....	85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86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86

#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귀중

제 출 일: 2019년 3월 7일  
성 명: 롯데케미칼(주)  
권 유 자: 주 소: 0555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전화번호: 02-829-4114

# I. 권유자 · 대리인 · 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롯데케미칼(주)	-	-	-	본인	-

주1) 상기 주식 소유 수량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주2) 2018년 12월 31일 기준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34,275,419주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롯데지주(주)	최대주주	보통주	7,965,201	23.24	최대주주	-
롯데물산(주)	계열회사	보통주	6,855,084	20.00	계열회사	-
(주)호텔롯데	계열회사	보통주	245,351	0.72	계열회사	-
LOTTE HOLDINGS CO.,LTD(日本)	계열회사	보통주	3,186,000	9.30	계열회사	-
신동빈	특수관계인	보통주	90,705	0.26	특수관계인	-
롯데문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11,495	0.03	특수관계인	-
계		-	18,353,836	53.55	-	-

##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최영광	-	-	임직원	-
어익준	-	-	임직원	-
서종원	-	-	임직원	-
정주안	-	-	임직원	-

## 3. 피권유자의 범위

2018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필요한 정족수 확보

##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19년 3월 12일, (종료일) - 2019년 3월 26일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http://www.lottechem.com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안내함

다. 권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위탁범위	비고
-	-	-
-	-	-

라.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9년 3월 27일 09시  
 (장소)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오디토리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소재)

마.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서종원  
 (부서 및 직위) 일반지원팀 수석  
 (연락처) 02-829-4231

##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18년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에 따른 Virgin 플라스틱 수요 증가, 전세계적 불안정 가동으로 인한 공급 타이트 이슈가 있었으나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의 이란 제재 지속으로 하반기 유가는 불안정하였으며 미국 ECC 기반 PE 본격 출회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가) 모노머 부문

2018년 EG 시황은, 전반적으로 上高下底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반기에는 MEG 신규 증설 부재 속에 유가 강세 및 다운스트림 폴리에스터 수요 호조세 지속 등에 힘입어 가격 강세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우려로 시장 심리 위축 되었으며, 중국에서의 대규모 석탄 MEG 신규 증설로 인한 공급 증가로 수급 악화되며 시장가격 및 수익성 하락하였습니다.

EOA의 경우, 상반기 국내외 콘크리트 감수제 수요의 급증으로 시장가격 및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 및 건설 경기 하락으로 시황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상반기 BD의 경우, 중국 춘절 전후 재고 확보성 수요 증가 및 투기자본 유입 그리고 2분기 일본 중심 Cracker T/A 집중에 따른 공급 타이트 예상에 따른 가수요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들어와 원료가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합성고무 업체 저율가동 및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T/A대비 수요 및 일부 BD maker trouble 영향으로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 수요감소 및 공급과잉 영향으로 시장가는 급락하였으며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둔화 영향으로 4분기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SM의 경우, ABS 중심 견조한 유도품 가동률로 수요 양호한 가운데, 미국 유럽 정기보수 및 트러블과 4~5월 중국 T/A집중에 따른 역내공급 제한으로 상반기 가격 강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는 일본, 동남아 T/A로 강세 유지되었으나, 4분기 들어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둔화 및 수입산 유입 증가로 인한 공급 Tight 해소로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 나) 폴리머 부문

유가 및 납사가 등 원료가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폴리머 제품은 약세 시장이 지속되면서 2018년 실적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PE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혜택 정책으로 저가 수입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고, PP 국내 신증설 물량의 본격적인 출회로 공급이 증가하여 전체 내수 시장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수요 시장은 회복되지 못한 채 저성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익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외 시장의 경우 두 강대국의 무역 정책 충돌에 따른 시장의 불안정성은 다수 물량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중국과 북미, 아시아 지역 위주의 신증설 물량 공급 확대 및 세계 경제 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유화사 뿐 아니라 정유사까지 폴리머 사업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공급 증가를 초래할 것이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저성장 환경 및 점점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정책 기조는 석유화학 산업의 어려움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시장을 찾아 판매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제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시장의 개척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 등 판매 거점을 확대 하고 있으며, 영업 Risk의 축소를 위해 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역외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 판매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특화 제품의 개발 및 판매 비중을 높임으로써 범용 제품의 안정적 판매와 특화 제품의 고수익 창출이라는 판매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은 결국 어려운 영업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해가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3(당)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42(전)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43(당) 기말		제42(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8,143,917,538,954		8,225,469,338,408
1. 현금및현금성자산	38,42	1,329,974,466,103		1,685,211,989,030	
2. 단기금융상품	4,38	3,306,356,089,721		3,086,656,512,787	
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38	61,228,839,825		2,434,730,122	
4. 매도가능금융자산	7,38	-		100,046,195,000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7,38	4,544,530,000		-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8	1,536,464,504,902		1,667,550,760,928	
7. 채고자산	9	1,777,344,107,136		1,535,989,483,699	
8. 금융리스채권	10,38	138,598,084		138,598,084	
9. 당기법인세자산		23,703,051,222		15,381,900,865	
10. 기타금융자산	4,8,38	31,091,183,088		19,507,537,143	
11. 기타유동자산	11	73,072,168,873		112,551,630,750	
II. 비유동자산			12,655,221,294,150		11,325,501,762,242
1. 장기금융상품	4,38	67,512,500,000		67,512,500,000	
2. 매도가능금융자산	7,38	-		255,241,155,482	
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38	10,477,026,362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7,38	105,494,703,734		-	
5. 금융리스채권	10,38	2,761,874,442		2,888,357,916	
6. 관계기업투자	12	1,610,446,273,728		1,438,963,136,291	
7. 공동기업투자	13	990,502,713,594		945,616,486,554	
8. 유형자산	15	8,036,093,695,375		6,716,184,181,432	
9. 투자부동산	16	112,015,364,493		114,606,808,510	
10. 영업권	17	723,796,856,918		723,796,856,918	
11. 기타무형자산	18	929,231,047,968		986,777,410,423	
12. 기타금융자산	8,38	21,961,882,770		20,253,421,140	
13. 기타비유동자산	11	12,351,445,832		15,230,234,510	
14. 이연법인세자산	35	32,575,908,934		38,431,213,066	
자 산 총 계			20,799,138,833,104		19,550,971,100,650
부 채					
I. 유동부채			3,961,420,261,244		3,790,891,299,787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9,38	1,102,408,993,149		1,420,006,265,123	
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20,38	223,020,520		133,610,266	
3. 차입금및사채	21,38	2,185,774,111,188		1,498,617,635,176	
4. 당기법인세부채	36	369,321,658,376		516,405,147,316	
5. 기타금융부채	22,38	126,034,288,844		181,182,416,161	
6. 기타유동부채	25	168,474,654,674		161,173,576,770	
7. 충당부채	26	9,183,534,493		13,372,648,975	
II. 비유동부채			3,293,391,331,347		3,505,312,739,432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20,38	43,310,577,157		25,238,394,790	

2. 차입금및사채	21,38	2,600,624,849,061		2,703,800,471,060	
3. 순확정급여부채	24	34,038,128,999		26,509,772,488	
4. 이연법인세부채	35	512,169,390,749		587,754,527,688	
5. 기타금융부채	22,38	13,765,745,922		43,060,201,548	
6. 기타비유동부채	25	14,162,651,831		10,557,221,128	
7. 총당부채	26	75,319,987,628		108,392,150,730	
부 채 총 계			7,254,811,592,591		7,296,204,039,219
자 본					
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2,734,717,751,049		11,489,628,164,151
1. 자본금	27	171,377,095,000		171,377,095,000	
2. 기타불입자본	28	880,861,285,570		880,743,872,602	
3. 이익잉여금	29	11,784,662,256,446		10,582,113,942,798	
4. 기타자본구성요소	30	(102,182,885,967)		(144,606,746,249)	
II. 비지배지분			809,609,489,464		765,138,897,280
자 본 총 계			13,544,327,240,513		12,254,767,061,43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0,799,138,833,104		19,550,971,100,650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3(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식	제 43(당) 기		제 42(전) 기	
I. 매출	3		16,545,013,876,662		15,874,510,689,910
II. 매출원가	36		13,792,192,144,448		12,081,876,222,814
III. 매출총이익			2,752,821,732,214		3,792,634,467,096
판매비와관리비	31,36		785,422,322,768		862,913,509,269
IV. 영업이익	3		1,967,399,409,446		2,929,720,957,827
금융수익	3,32		184,904,701,505		253,053,655,691
금융비용	3,33		194,589,278,042		273,186,322,842
지분법투자손익	12,13		202,316,945,067		284,443,693,668
기타영업외수익	3,34		317,101,520,810		213,268,096,980
기타영업외비용	3,34		224,481,202,464		322,614,040,202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		2,252,652,096,322		3,084,686,041,122
법인세비용	35		610,717,958,486		800,109,102,761
VI. 당기순이익			1,641,934,137,836		2,284,576,938,361
VII. 기타포괄손익			107,719,724,682		(428,342,968,836)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2,142,722,394)		(57,569,625,82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4	(20,424,474,469)		(19,208,894,76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 산평가손익		758,177,215		-	
지분법이익잉여금	12,13	(20,863,647,286)		642,665,098	
해외사업환산손익		27,939,229,487		(43,476,747,966)	
지분법자본변동	12,13	(14,712,032,490)		-	
법인세효과	30	15,160,025,149		4,473,351,811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19,862,447,076		(370,773,343,01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8,235,014,796	
과생상품평가손익	23	(129,744,253)		1,252,661,761	
해외사업환산손익		105,640,140,601		(355,338,412,119)	
지분법자본변동	12,13	14,316,371,058		(29,013,393,026)	
법인세효과	30	35,679,670		(5,909,214,426)	
VIII. 총포괄이익			1,749,653,862,518		1,856,233,969,525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1,579,194,571,925		2,243,875,142,823
비지배지분			62,739,565,911		40,701,795,538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1,658,916,975,700		1,859,116,215,130
비지배지분			90,736,886,818		(2,882,245,605)
IX.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	37		46,074		65,625

## - 자본변동표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43(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주주지분				비지배주주지분	총 계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I. 2017.01.01.(전기초)	171,377,095,000	478,576,150,133	8,486,992,508,654	226,166,596,765	37,704,819,880	9,400,817,170,432
1. 배당금의 지급	-	-	(134,768,124,000)	-	(14,756,000)	(134,782,880,000)
2.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	-	204,904,996,994	-	-	730,331,079,005	935,236,075,999
3. 자기주식처분	-	197,262,725,475	-	-	-	197,262,725,475
4. 총포괄이익	-	-	2,229,889,558,144	(370,773,343,014)	(2,882,245,605)	1,856,233,969,525
당기순이익	-	-	2,243,875,142,823	-	40,701,795,538	2,284,576,938,36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14,538,718,214)	-	(107,293,177)	(14,646,011,391)
지분법이익잉여금	-	-	553,133,535	-	-	553,133,53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12,632,613,833	-	12,632,613,833
지분법자본변동	-	-	-	(29,013,393,026)	-	(29,013,393,026)
과생상품평가이익	-	-	-	945,848,298	-	945,848,298

해외사업환산손실	-	-	-	(355,338,412,119)	(43,476,747,966)	(398,815,160,085)
II. 2017.12.31.(전기말)	171,377,095,000	880,743,872,602	10,582,113,942,798	(144,606,746,249)	765,138,897,280	12,254,767,061,431
III. 2018.01.01.(당기초)	171,377,095,000	880,743,872,602	10,582,113,942,798	(144,606,746,249)	765,138,897,280	12,254,767,061,431
회계정책의 변경(주석 45)	-	-	15,901,537,848	(65,547,482,690)	-	(49,645,944,842)
IV. 2018.01.01.(변경 후)	171,377,095,000	880,743,872,602	10,598,015,480,646	(210,154,228,939)	765,138,897,280	12,205,121,116,589
1. 배당금의 지급	-	-	(366,591,899,500)	-	(44,902,733,105)	(411,494,632,605)
2.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	-	117,412,968	-	-	(1,363,561,529)	(1,246,148,561)
3. 관계기업처분	-	-	-	2,293,042,572	-	2,293,042,572
4. 총포괄이익	-	-	1,553,238,675,300	105,678,300,400	90,736,886,818	1,749,653,862,518
당기순이익	-	-	1,579,194,571,925	-	62,739,565,911	1,641,934,137,83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15,093,183,472)	-	100,015,084	(14,993,168,388)
지분법이익잉여금	-	-	(10,862,713,153)	-	(63,721,638)	(10,926,434,79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이익	-	-	-	549,683,788	-	549,683,788
지분법자본변동	-	-	-	(417,459,406)	21,797,974	(395,661,432)
과생상품평가손실	-	-	-	(94,064,583)	-	(94,064,583)
해외사업환산이익	-	-	-	105,640,140,601	27,939,229,487	133,579,370,088
V. 2018.12.31.(당기말)	171,377,095,000	880,861,285,570	11,784,662,256,446	(102,182,885,967)	809,609,489,464	13,544,327,240,513

-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43(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80,927,825,833		3,129,011,398,101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205,944,751,828		3,719,321,439,300	
(1) 당기순이익	1,641,934,137,836		2,284,576,938,361	
(2) 조정사항	1,107,240,718,652		1,364,787,004,615	
법인세비용	610,717,958,486		800,109,102,761	
이자비용	83,188,521,615		107,123,859,951	
이자수익	(104,646,195,750)		(62,758,352,955)	
배당금수익	(1,244,349,109)		(794,570,800)	
외화환산손실	43,506,353,890		62,377,256,153	
외화환산이익	(31,497,841,889)		(100,926,658,689)	
지분법손실	58,565,152,508		9,793,735,299	
지분법이익	(260,882,097,575)		(294,237,428,967)	
당기순이익인식금융부채평가손실	-		28,345,993,258	
당기순이익-공정가치금융부채평가손실	18,155,958,263		-	
당기순이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6,457,141,14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7,554,505,733)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처분손실	-		21,670,34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처분손실	1,108,873,92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778,494,58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이익	(542,889,772)		-
과생상품평가손실	181,960,253		42,982,149,113
과생상품평가이익	(8,791,198,846)		(700,741,078)
과생상품거래손실	2,463,791,718		5,685,584,709
과생상품거래이익	(8,734,670,000)		(3,050,694,253)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4,376,028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0,574,886,8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실	846,922,406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48,923,000,000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42,360,969,063)		-
유형자산처분손실	2,211,475,103		11,072,968,891
유형자산처분이익	(3,596,358,101)		(1,387,454,845)
유형자산손상차손	712,396,323		-
무형자산처분손실	69,536,875		24,961,000
투자부동산처분이익	(1,959,762,639)		-
재고자산평가손실	25,807,307,675		(289,243,723)
대손상각비	1,269,316,901		53,078,588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157,244)		(7,114,589)
감가상각비	602,930,424,737		605,950,238,878
무형자산상각비	82,106,847,161		85,212,994,043
충당부채의 환입	(1,641,240,747)		(5,476,055,900)
퇴직급여	44,890,369,915		42,631,245,900
장기종업원급여	1,959,787,368		1,913,628,071
(3) 운전자본의 변동	(543,230,104,660)		69,957,496,324
매출채권	122,316,172,909		(172,619,571,444)
기타채권	28,635,280,493		20,477,188,539
재고자산	(258,120,135,736)		(100,974,124,070)
기타금융자산	36,723,785,569		(13,324,227,831)
기타자산	(3,469,690,441)		36,970,778,951
매입채무	(328,062,063,371)		314,219,287,459
기타채무	(13,866,314,581)		(24,261,553,617)
기타금융부채	(53,768,588,414)		44,822,959,941
기타부채	(29,369,436,532)		16,717,672,403
순확정급여채무	(44,249,114,556)		(52,070,914,007)
2. 법인세의 납부	(825,016,925,995)		(590,310,041,199)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63,101,864,188)	(4,717,557,637,78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52,310,173,431		162,128,712,00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7,859,488,633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3,000,00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861,548,735		2,005,837,21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40,512,840,8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144,335,202,551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67,117,896,437		-	
유형자산의 처분	14,897,907,398		2,937,892,146	
무형자산의 처분	-		300,000,000	
투자부동산의 처분	2,882,610,000		-	
이자의 수취	99,105,488,469		52,361,498,981	
배당금의 수취	91,861,513,219		61,409,802,300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3,388,517,989		2,597,840,521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215,412,037,619)		(4,879,686,349,785)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68,220,213,812		2,786,597,801,239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1,206,738,291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172,609,554		9,688,916,33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		4,739,816,68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1,600,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1,846,449,598,620		2,019,897,194,135	
무형자산의 취득	1,399,497,676		2,655,888,102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95,995,686,650		-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54,899,995,000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1,574,431,307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4,829,295,983		1,114,530,248,36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467,394,773,216		4,058,223,835,089	
단기차입금의 차입	2,238,849,812,196		1,919,940,373,508	
장기차입금의 차입	1,026,132,701,248		795,174,953,562	
사채의 발행	199,440,060,000		189,446,260,000	
자기주식의 처분	-		213,366,139,520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2,972,199,772		5,060,032,500	
중속기업소유지분변동	-		935,236,075,999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422,565,477,233)		(2,943,693,586,727)	
단기차입금의 상환	2,130,915,765,241		2,495,821,718,368	
장기차입금의 상환	23,956,180,000		18,998,112,000	
사채의 상환	776,210,120,000		200,000,000,000	
이자의 지급	68,527,662,015		90,352,011,359	
배당금의 지급	411,494,632,605		134,782,880,000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10,204,081,750		3,738,865,000	
비지배지분의 감소	1,257,035,622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 II+ III)		(337,344,742,372)		(474,015,991,319)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685,211,989,030		2,202,944,465,224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7,892,780,555)		(43,716,484,87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329,974,466,103		1,685,211,989,030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 1-1 지배기업의 개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76년 3월 16일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서울본사·부산·대구·대전지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1년 5월3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9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롯데대산유화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2년 12월 27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에서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롯데지주(주)	7,965,201 주	23.24%
롯데물산(주)	6,855,084 주	20.00%
Lotte Holdings Co., Ltd.	3,186,000 주	9.30%
기 타	16,269,134 주	47.46%
계	34,275,419 주	100.00%

1-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회사명	결산일	업종	연결실체 지분율	비지배지분 지분율	소재지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12.31.	판매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12.31.	화학제조	76.01%	23.99%	말레이시아 등
삼박엘에프티(주)	12.31.	화학제조	99.84%	0.16%	국내
테크항공(주)	12.31.	부품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2.31.	화학제조	100.00%	-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주)케이피캡텍	12.31.	화학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2.31.	화학제조	75.01%	24.99%	파키스탄
Lotte Chemical UK Limited	12.31.	화학제조	100.00%	-	영국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2.31.	판매	100.00%	-	폴란드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12.31.	화학제조	90.41%	9.59%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12.31.	화학제조	100.00%	-	중국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주1)	12.31.	화학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Nigeria Limited (주2)	12.31.	판매	100.00%	-	나이지리아

(전기말)

회사명	결산일	업종	연결실체 지분율	비지배지분 지분율	소재지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12.31.	판매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12.31.	화학 제조	76.01%	23.99%	말레이시아 등
삼박엘에프티(주)	12.31.	화학 제조	99.51%	0.49%	국내
테크항공(주)	12.31.	부품 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2.31.	화학 제조	100.00%	-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주)케이피캠텍	12.31.	화학 제조	100.00%	-	국내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2.31.	화학 제조	75.01%	24.99%	파키스탄
Lotte Chemical UK Limited	12.31.	화학 제조	100.00%	-	영국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2.31.	판매	100.00%	-	폴란드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12.31.	화학 제조	90.41%	9.59%	미국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12.31.	화학 제조	100.00%	-	중국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주1)	12.31.	화학 제조	100.00%	-	국내

(주1) 지배기업은 롯데첨단소재(주)의 지분 90% 취득시 비지배주주(삼성 SDI(주))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첨단소재(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100만주(지분율 10%)에 대하여 지배기업이 주식매수 선택권(Call 옵션)을 보유하고, 주식매도선택권(Put 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배기업은 동 기명식 보통주식 100만주(지분율1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하였으며 옵션행사가격(고정금액)은 현재가치를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주석 21 참조).

(주2) 당기 중 신규설립하였습니다.

(2) 당기 중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거나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속기업명	사유
신규포함	Lotte Chemical Nigeria Limited	신규설립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69,640,566	6,069,493	38,282,502	-	37,427,557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41,824,695	7,234,719	7,666,489	-	41,392,925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54,069,772	63,393,135	66,353,757	17,872,870	33,236,280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1,611,934,505	2,043,824,166	226,419,686	182,719,224	3,241,894,022	4,725,739
삼박엘에프티㈜	38,225,384	22,081,873	21,453,307	2,072,493	36,781,457	-
테크항공㈜	9,498,469	10,933,595	4,405,715	16,611,927	(585,578)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6,182,395	17,806,485	8,615,976	11,182,520	14,190,384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8,509,373	11,966,542	7,966,093	-	12,509,822	-
㈜케이피켄텍	41,548,871	12,213,186	24,313,777	722,210	28,726,070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24,402,580	45,574,433	68,945,803	1,002,600	100,028,610	-
Lotte Chemical UK Limited	217,870,650	86,599,443	218,757,618	137,771,039	(52,058,564)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24,881,054	104,948	24,657,272	2,604	326,126	-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181,501,863	3,016,042,581	402,262,697	1,386,072,136	1,409,209,611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5,928,152	11,652,683	3,672,867	-	13,907,968	-
롯데첨단소재㈜와 그 종속기업	1,352,982,881	894,915,259	527,410,880	15,282,359	1,702,564,689	2,640,212
Lotte Chemical Nigeria Limited	270,754	-	62,608	-	208,146	-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지분	비지배지분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54,371,271	30,658,424	47,928,674	-	37,101,021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41,617,411	11,319,136	8,674,212	-	44,262,335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53,674,115	64,296,052	37,919,375	40,020,149	40,030,643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1,513,859,047	1,972,341,228	223,861,833	205,319,008	3,051,801,034	5,218,400
삼박엘에프티㈜	34,556,348	23,973,448	21,833,473	2,163,802	34,532,521	-
테크항공㈜	8,367,607	11,750,097	4,641,006	15,958,867	(482,169)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0,082,487	8,150,096	5,566,158	-	12,666,425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8,191,776	12,903,669	2,448,622	5,236,800	13,410,023	-
㈜케이피켄텍	42,923,326	12,199,034	28,067,857	844,366	26,210,137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127,121,205	71,524,139	94,339,864	951,349	103,354,131	-
Lotte Chemical UK Limited	174,763,881	98,599,444	227,780,310	139,634,410	(94,051,395)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17,335,286	90,522	16,879,356	44,701	501,751	-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122,441,137	1,935,986,718	10,429,096	696,155,068	1,351,843,691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5,204,115	12,400,365	2,792,067	-	14,812,413	-
롯데첨단소재㈜와 그 종속기업	1,148,051,578	921,493,251	467,755,349	12,703,960	1,587,071,810	2,013,710

(4) 당기와 전기 중 각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손익	비지배지분 총포괄손익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219,607,770	1,616,327	540,122	326,536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68,943,079	3,599,781	2,554,119	2,422,275	-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39,943,544	(2,110,062)	(6,723,741)	(6,794,363)	-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2,526,570,315	184,556,712	216,193,245	334,827,381	552,669	768,664
삼박엘에프티㈜	101,324,672	5,968,400	5,497,332	5,248,571	-	-
테크항공㈜	20,753,045	868,787	404,495	(103,409)	-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28,223,254	1,429,751	956,385	1,523,942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1,268,058	(699,026)	(845,772)	(900,200)	-	-
㈜케이피캡텍	218,906,026	3,089,167	2,514,715	2,515,933	-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520,620,182	62,506,241	40,190,085	18,536,602	-	-
Lotte Chemical UK Limited	471,952,412	21,222,028	42,111,621	41,990,315	-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59,594,096	145,547	(165,409)	(176,735)	-	-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	(6,266,822)	(1,533,208)	57,365,921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6,247,029	(817,689)	(842,315)	(904,445)	-	-
롯데첨단소재㈜와 그 종속기업	3,070,694,673	235,784,703	183,722,606	182,492,878	524,565	626,502
Lotte Chemical Nigeria Limited	110,675	(157,962)	(158,267)	(147,660)	-	-

(전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손익	비지배지분 총포괄손익
Lotte Chemical Trading (Shanghai) Corp.	289,344,341	4,591,443	5,159,234	5,159,234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Jiaxing) Co., Ltd.	77,183,723	7,089,709	4,791,307	4,791,307	-	-
Lotte Chemical (Jiaxing) Corp.	132,557,397	(2,201,343)	(2,204,096)	(2,204,096)	-	-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2,044,940,846	280,778,950	268,918,598	309,949,214	(189,419)	(870,191)
삼박엘에프티㈜	96,259,296	7,432,726	6,442,200	6,567,009	-	-
테크항공㈜	20,162,864	2,471,148	2,072,139	2,128,314	-	-
Lotte Chemical Alabama Corp.	19,571,939	1,386,929	969,660	969,660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Hefei) Co., Ltd.	13,329,080	(65,148)	(405,193)	(405,193)	-	-
㈜케이피캡텍	175,244,354	800,817	397,819	563,479	-	-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397,748,641	8,090,012	4,428,066	4,317,457	-	-
Lotte Chemical UK Limited	357,267,673	(3,197,353)	(12,039,626)	(12,039,626)	-	-
Lotte Chemical Poland Sp. zo.o.	53,581,361	274,225	643,692	643,692	-	-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	(8,030,671)	(14,851,519)	(14,851,519)	-	-
Lotte Chemical Engineering Plastics (Shenyang) Co., Ltd.	547,237	(1,009,150)	(961,919)	(961,919)	-	-

롯데첨단소재(주)와 그 종속기업	2,894,156,122	332,591,758	250,951,722	247,420,945	340,131	288,478
-------------------	---------------	-------------	-------------	-------------	---------	---------

(5) 당기와 전기 중 각 종속기업별로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배당 금액 중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몫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비지배지분 소유지분율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이익	비지배지분 귀속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지급 배당금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주1)	23.99%	646,578,157	52,308,119	74,787,637	39,425,500
삼박엘에프티㈜	0.16%	49,435	8,914	8,513	14,756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24.99%	25,137,921	10,045,068	10,881,904	5,462,477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9.59%	135,203,764	(147,100)	4,534,268	-
롯데첨단소재㈜와 그 종속기업 (주2)	-	2,640,212	524,565	524,565	-
합 계		809,609,489	62,739,566	90,736,887	44,902,733

(전 기)

(단위: 천원)					
회사명	비지배지분 소유지분율	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이익	비지배지분 귀속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지급 배당금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주1)	23.99%	607,288,310	39,602,277	4,915,899	-
삼박엘에프티㈜	0.49%	169,764	32,534	33,148	14,756
Lotte Chemical Pakistan Limited	24.99%	25,967,207	1,114,471	(392,903)	-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9.59%	129,699,906	(387,618)	(7,778,521)	-
롯데첨단소재㈜와 그 종속기업 (주2)	-	2,013,710	340,131	340,131	-
합 계		765,138,897	40,701,796	(2,882,246)	14,756

(주1)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재무정보입니다.

(주2) 롯데첨단소재㈜와 그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재무정보입니다.

(6) 당기와 전기 중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회사명	거래전 지분율	거래후 지분율	지분대가	비지배지분증감	기타불입자본의증감
삼박엘에프티㈜	99.51%	99.84%	(440,550)	(114,086)	(326,464)

(전 기)

(단위: 천원)					
회사명	거래전 지분율	거래후 지분율	지분대가	비지배지분증감	기타불입자본의증감
Lotte Chemical Titan Holding Berhad와 그 종속기업	100.00%	76.01%	935,236,076	591,974,231	343,261,845
Lotte Chemical USA Corp.와 그 종속기업	100.00%	90.41%	-	138,356,848	(138,356,848)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연차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세 가지 측면인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표시된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의 상세정보는 주석 4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하며, 해당 계약들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과 교환하여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실체와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의 상세정보는 주석 45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계정대체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에 대해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에 용도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및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이 없으므로 개정 기준서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개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개정 기준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1)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3)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최초채택 기업 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

문단 E3~E7의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은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으며 해

당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적용가능하지 않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예: 기초자산 \$5,000 이하), 단기 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의 두 가지 인식 면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로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동안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효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현행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할 것입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9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기준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개정사항은 보고기간 중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일어났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 제도의 정산, 축소, 청산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전, 후의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
-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후 잔여 연차 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 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

개정사항은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발생하여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이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 인식 후,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후의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에 대해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에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비교정보의 재작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소급적용으로 인한 효과는 최초 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다른 자본요소)에 반영합니다.

- 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제정된 해석서는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당국에 의해 인정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인식 및 측정에 적용하며, 법인세 처리 불확실성의 회계단위와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비교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거나 최초 적용연도 기초에 변경 효과를 반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차개선 2015-2017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향후 사업결합 거래에 적용될 것입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 거래에 적용될 것입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 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 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3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예)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지분을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다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2-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이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분법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회수가능

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2-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 2-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연결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2-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

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 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 2-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실체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실체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실체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3) 보증 의무

연결실체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 (4) 계약 잔액

##### -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 -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실체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식 2-16 참고)

##### -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2-9 리스

리스는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1)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말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주식 2-11 참고)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 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수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0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위험회피회계정책에 대해 서는 주석 2-23 참고)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

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1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2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3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 2-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2-16 금융자산

### (1) 분류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

식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2) 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 (3) 손상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실체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 2-1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 물	10~50년
구 축 물	15~50년
기 계 장 치	6~30년
차 량 운 반 구	4~5년
공 구 와 기 구	4~5년
비 품	4~5년
기타의유형자산	1~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9 무형자산

###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무형자산 중 회원권과 사업결합으로 인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기타의 무형자산	4~5년
고객관계등	10~15년

## 2-20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2-2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
-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23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 )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자본구성요소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 된금액은 연결포괄손익 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2-24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25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부채 등의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2-26 전기 재무제표의 계정재분류

당사는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교공시된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이익이나 전기말에 보고된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43(당) 기말 2018년 12월 31일 현재

제 42(전) 기말 2017년 12월 31일 현재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식	제 43(당) 기말		제 42(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4,623,398,035,816		5,067,992,175,734
1. 현금및현금성자산	40	457,664,455,133		910,110,351,183	
2. 단기금융상품	4	2,281,389,729,257		2,111,153,641,467	
3. 매도가능금융자산	7,43	-		100,046,195,000	
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43	59,800,000,000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 자산	7,43	4,544,530,000		-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39	946,101,563,222		1,075,154,095,089	
7. 재고자산	9	824,630,562,837		801,270,856,803	
8. 금융리스채권	10	297,322,429		297,322,429	
9. 기타금융자산	8	17,498,724,885		12,822,275,762	
10. 기타유동자산	11	31,471,148,053		57,137,438,001	
II. 비유동자산			10,578,491,243,169		10,201,377,307,369
1. 장기금융상품	4	67,506,500,000		67,506,500,000	
2. 매도가능금융자산	7,43	-		254,144,319,419	
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	1,200,000,000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 자산	7	105,221,892,898		-	
5. 금융리스채권	10	4,186,397,772		4,399,394,859	
6. 종속기업투자	12	5,253,093,042,614		5,246,539,660,141	
7. 관계기업투자	13	1,625,454,858,540		1,380,112,407,302	
8. 공동기업투자	14	770,944,131,460		771,940,181,143	
9. 유형자산	15	2,585,550,757,092		2,306,016,105,247	
10. 투자부동산	16	96,497,778,104		98,854,230,921	
11. 무형자산	17	24,499,657,292		21,471,890,752	
12. 기타금융자산	8,39	41,928,227,397		47,351,617,585	
13. 기타비유동자산	11	2,408,000,000		3,041,000,000	
자 산 총 계			15,201,889,278,985		15,269,369,483,103
부 채					
I. 유동부채			2,564,885,825,816		2,794,813,889,570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39	655,545,644,155		872,349,182,446	

2. 차입금및사채	20	1,379,202,067,544		1,273,498,527,281	
3. 당기법인세부채		344,288,807,564		460,134,030,812	
4. 기타금융부채	21	51,365,072,475		58,177,913,426	
5. 기타유동부채	24	125,955,983,934		117,310,977,305	
6. 총당부채	25	8,528,250,144		13,343,258,300	
II. 비유동부채			1,206,445,208,437		2,097,274,334,094
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19	43,310,577,157		25,238,394,790	
2. 차입금및사채	20	1,044,486,559,155		1,846,142,232,895	
3. 순확정급여부채	23	22,128,398,564		16,800,653,312	
4. 이연법인세부채		50,173,127,797		135,961,187,322	
5. 기타금융부채	21	32,353,621,905		59,933,600,916	
6. 기타비유동부채	24	9,918,395,766		8,539,176,500	
7. 총당부채	25	4,074,528,093		4,659,088,359	
부 채 총 계			3,771,331,034,253		4,892,088,223,664
자 본					
I. 자본금	26	171,377,095,000		171,377,095,000	
II. 기타불입자본	27	968,318,556,590		968,318,556,590	
III. 이익잉여금	28,43	10,311,394,202,741		9,211,371,437,921	
IV. 기타자본구성요소	29,43	(20,531,609,599)		26,214,169,928	
자 본 총 계			11,430,558,244,732		10,377,281,259,43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5,201,889,278,985		15,269,369,483,103

## 포괄손익계산서

제 43(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식	제 43(당) 기		제 42(전) 기	
I. 매출	3,39		10,133,832,338,956		10,149,509,820,365
II. 매출원가	9,35,39,43		8,218,868,872,654		7,350,278,466,239
III. 매출총이익			1,914,963,466,302		2,799,231,354,126
판매비와관리비	30,35,43		392,155,313,423		432,647,011,682
IV. 영업이익	3		1,522,808,152,879		2,366,584,342,444
금융수익	31		99,835,304,481		174,693,920,041
금융비용	32		134,049,634,979		210,089,873,536
기타영업외수익	33		558,450,296,856		229,714,219,710
기타영업외비용	33		119,331,403,366		335,478,699,807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		1,927,712,715,871		2,225,423,908,852
법인세비용	34		501,434,674,642		594,199,078,500
VI. 당기순이익			1,426,278,041,229		1,631,224,830,352
VII. 기타포괄손익			(13,109,156,436)		(2,303,621,366)
1.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3,015,091,853)		(15,881,732,66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3,28	(18,709,860,722)		(20,952,153,91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7,29	758,009,889		-	
법인세효과	28,29	4,936,758,980		5,070,421,246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94,064,583)		13,578,111,29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8,234,551,956	
파생상품평가손익	22,29	(129,744,253)		1,252,661,761	
법인세효과	29	35,679,670		(5,909,102,419)	
VIII. 총포괄이익			1,413,168,884,793		1,628,921,208,986
IX. 주당이익	36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41,612		47,707

## 자 본 변 동 표

제 43(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I. 2017.01.01.(전기초)	171,377,095,000	22,913,227,871	748,142,603,244	7,730,796,464,233	13,501,293,156	(865,234,526)	8,685,865,448,978
1. 배당금의 지급				(134,768,124,000)			(134,768,124,000)
2. 자기주식처분			197,262,725,475				197,262,725,475
3. 총포괄이익				1,615,343,097,688	12,632,263,000	945,848,298	1,628,921,208,986
당기순이익				1,631,224,830,352			1,631,224,830,35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15,881,732,664)			(15,881,732,664)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2,632,263,000		12,632,263,000
파생상품평가이익						945,848,298	945,848,298
II. 2017.12.31.(전기말)	171,377,095,000	22,913,227,871	945,405,328,719	9,211,371,437,921	26,133,556,156	80,613,772	10,377,281,259,439
I. 2018.01.01.(당기초)	171,377,095,000	22,913,227,871	945,405,328,719	9,211,371,437,921	26,133,556,156	80,613,772	10,377,281,259,439
회계정책의 변경(주식 43)				47,201,272,114	(47,201,272,114)		
I. 2018.01.01.(변경후)	171,377,095,000	22,913,227,871	945,405,328,719	9,258,572,710,035	(21,067,715,958)	80,613,772	10,377,281,259,439
1. 배당금의 지급				(359,891,899,500)			(359,891,899,500)
2. 총포괄이익				1,412,713,392,206	549,557,170	(94,064,583)	1,413,168,884,793
당기순이익				1,426,278,041,229			1,426,278,041,229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13,564,649,023)			(13,564,649,02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이익					549,557,170		549,557,170
파생상품평가손실						(94,064,583)	(94,064,583)
II. 2018.12.31(당기말)	171,377,095,000	22,913,227,871	945,405,328,719	10,311,394,202,741	(20,518,158,788)	(13,450,811)	11,430,558,244,732

## 현 금 흐 름 표

제 43(당) 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74,455,204,941		2,331,524,130,017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772,550,723,706		2,841,405,902,834	
(1) 당기순이익	1,426,278,041,229		1,631,224,830,352	
(2) 조정사항	489,441,082,199		1,119,211,628,093	
법인세비용	501,434,674,642		594,199,078,500	
이자수익	(59,399,719,560)		(37,085,956,902)	
이자비용	60,748,988,775		77,101,720,154	
배당금수익	(284,638,949,742)		(95,389,529,290)	
외화환산손실	13,744,436,261		29,922,319,377	
외화환산이익	(5,469,715,583)		(64,896,740,241)	
파생상품평가손실	181,960,253		42,982,149,113	
파생상품평가이익	(8,791,198,846)		(700,741,078)	
파생상품거래손실	2,463,791,718		5,685,584,709	
파생상품거래이익	(8,734,670,000)		(3,050,694,253)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평가손실	-		25,238,394,79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평가손실	18,072,182,367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0,574,886,8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실	846,922,406		-	
매도가능금융자산상차손	-		48,923,000,000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12,598,423,527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환입	(18,796,000,000)		(11,425,000,000)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		94,176,000,000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환입	(88,727,337,849)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27,737,323,176)		-	
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	6,760,767,868		14,228,000,000	
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환입	(5,764,718,185)		-	
유형자산처분이익	(3,162,479,034)		(1,286,475,175)	
유형자산처분손실	1,876,953,463		624,023,174	
무형자산처분손실	69,536,875		24,961,000	
투자부동산처분이익	(1,959,762,639)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2,307,000,000		308,000,000	
대손상각비(환입)	631,160,954		(7,294,271)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27,565,964,811)		8,529,964,811	
감가상각비	365,829,558,478		378,796,198,687	
무형자산상각비	1,431,748,565		1,494,823,369	
퇴직급여	26,402,439,906		24,976,277,667	
장기종업원급여	1,943,364,966		1,894,506,696	
충당부채의 진입(환입)	2,845,010,600		(5,476,055,900)	
(3) 운전자본의 변동	(143,168,399,722)		90,969,444,389	
매출채권	130,361,051,042		(82,025,779,241)	
기타채권	93,039,337,229		(17,355,664,591)	
재고자산	(35,666,706,034)		(33,521,752,308)	
기타자산	(917,552,986)		(1,616,855,556)	
매입채무	(213,093,231,450)		212,070,396,479	

기타채무	(42,488,674,874)		34,503,687,290	
기타금융부채	(10,706,045,607)		1,601,567,654	
기타부채	(25,018,159,822)		20,411,434,582	
순확정급여부채	(38,678,417,220)		(43,097,589,920)	
2. 법인세의 납부	(698,095,518,765)		(509,881,772,81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6,572,622,848)		(2,247,738,732,92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54,401,888,468		167,491,813,959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3,000,00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530,068,202		1,734,389,294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40,512,840,8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144,335,202,551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67,117,896,437		-	
유형자산의 처분	14,309,031,594		1,553,371,276	
투자부동산의 처분	2,882,610,000		-	
무형자산의 처분	-		300,000,000	
이자의 수취	54,899,967,269		27,998,683,255	
배당금의 수취	270,327,112,415		95,389,529,29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60,974,511,316)		(2,415,230,546,884)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30,036,087,790		1,778,911,363,211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56,514,063		8,864,772,7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4,739,816,68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1,200,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632,739,598,613		276,864,471,289	
무형자산의 취득	590,818,200		944,328,0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355,806,000		290,005,800,00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95,995,686,650		-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54,899,995,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21,161,212,997)		(587,820,596,83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198,691,202,338		2,311,557,132,397	
단기차입금의 차입	1,996,821,832,338		1,903,684,700,377	
자기주식의 처분	-		213,366,139,520	
사채의 발행	199,440,060,000		189,446,260,000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2,429,310,000		5,060,032,5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319,852,415,335)		(2,899,377,729,234)	
단기차입금의 상환	2,122,901,967,673		2,489,813,448,544	
사채의 상환	776,210,120,000		200,000,000,000	
이자의 지급	50,644,346,412		71,057,291,690	
배당금의 지급	359,891,899,500		134,768,124,000	
파생상품거래의 정산	10,204,081,750		3,738,865,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I + II + III)		(453,278,630,904)		(504,035,199,745)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10,110,351,183		1,433,378,148,707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 환율변동효과		832,734,854		(19,232,597,779)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57,664,455,133		910,110,351,18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3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제 42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2017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9년 03월 27일 처분확정일 2018년 03월 19일

(단위: 천원)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1. 미처분이익잉여금		1,462,005,655		1,617,543,008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90,990		2,199,910	
회계정책의 변경	47,201,272		-	
보험수리적손익	(13,564,648)		(15,881,732)	
당기순이익	1,426,278,041		1,631,224,830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16,000,000		20,000,0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6,000,000		20,000,000	
합 계		1,478,005,655		1,637,543,008
3. 이익잉여금처분액		1,476,000,000		1,635,452,018
이익준비금	-		13,860,118	
사업확장적립금	1,114,708,100		1,261,700,000	
기타 임의적립금 (주1)	1,400,000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10,500원(210%) 전기 10,500원(210%))	359,891,900		359,891,900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05,655		2,090,990

(주1)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1. 회사의 개요

롯데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6년 3월 16일에 설립되어 석유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수, 대산 및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서울본사·부산·대구·대전지점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1년 5월 30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KRX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9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롯데대산유화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2년 12월 27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에서 롯데케미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롯데지주(주)	7,965,201 주	23.24%
롯데물산(주)	6,855,084 주	20.00%
Lotte Holdings Co., Ltd.	3,186,000 주	9.30%
기 타	16,269,134 주	47.46%
계	34,275,419 주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개시하는 연차기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세 가지 측면인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의 상세정보는 주석 4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하며, 해당 계약들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과 교환하여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기준서는 당사와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의 상세정보는 주석 4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에 대해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투자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에 용도 변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및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이 없으므로 개정 기준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개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개정 기준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그 자체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보유한 종속기업의 지분에 대하여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1)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 (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이 되는 시점, (3)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최초로 지배기업이 되는 시점 중 가장 나중의 시점에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최초채택 기업 의 단기 면제 규정 삭제  
문단 E3~E7의 최초채택기업의 단기 면제 규정은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단일 모델로 회계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 기준서는 리스이용자에 대해 소액자산 리스(예: 기초자산 \$5,000 이하), 단기 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의 두 가지 인식 면제 규정을 포함합니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로 지급에 대한 부채(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기초자산에 대한 리스기간동안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자산(사용권 자산)을 인식할 것입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이자비용과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특정 사건(즉, 리스기간의 변동,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이 발생하면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용권 자산을 조정함으로써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현행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모든 리스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동일한 분류 원칙을 사용하여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할 것입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에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보다 광범위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9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기준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일부 중도상환 가능한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변경 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 변경으로 인한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개정사항은 보고기간 중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일어났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 제도의 정산, 축소, 청산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전, 후의 제도와 사외적립자산에서 제공된 급여를 반영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
-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후 잔여 연차 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재측정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

개정사항은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발생하여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 자산인식상한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이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 인식 후,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 후의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고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에 대해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상품(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손상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 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시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비교정보의 재작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소급적용으로 인한 효과는 최초 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다른 자본요소)에 반영합니다.

- 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정)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서 제1012호의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1012호의 적용범위가 아닌 세금 또는 부담금과 구체적으로 세금 또는 부담금과 관련된 불확실한 세무 처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해석서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에 관한 기업의 가정
- 기업이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 기업이 사실 및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

당사는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각각을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하나 이상의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고려할지를 판단합니다. 접근법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이 해석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유효하며 특정 경과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시행일에 이 해석서를 적용할 것입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당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3) 보증 의무

당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유형의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 (4) 계약 잔액

### -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와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 -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9 참고)

### -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 2-3 리스

리스는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1) 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해서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로,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 기준이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 리스제공자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수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4 외화환산

당사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위험회피회계정책에 대해서는 주석 2-17 참고)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2-5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6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2-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차감될 손

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2-9 금융자산

### (1) 분류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2) 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 (3) 손상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 2-10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건 물	10~50년
구 축 물	15~40년
기 계 장 치	7~15년
차 량 운 반 구	4년
비 품	4년
공 구 와 기 구	4년
기타의유형자산	1~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3 무형자산

###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기타의 무형자산	4~5년

## 2-14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

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2-16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
-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2-17 파생상품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2)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4)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2-18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공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 측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19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당사에 채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 2-20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부채 등의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 2-21 전기 재무제표의 계정재분류

당사는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교공시된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이익이나 전기말에 보고된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43 기	제 42 기
주당배당금 (원)	10,500	10,500
배당총액 (원)	359,891,899,500	359,891,899,500
시가배당율 (%)	3.66	2.89

※ 시가배당율 산정시 시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 전 과거 1주일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주가를 사용 하였습니다.

※ 상세한 재무제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추후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정관의 변경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p>제2조(목적) 1. ~ 27. 생략 28.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p>	<p>제2조(목적) 1. ~ 27. 생략 28.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9.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p>	<p>수처리사업 영위(관련 면허 취득 등)를 위하여 정관상 목적사업 추가</p>
<p>제9조 (주권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및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p>	<p>제9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전자증권법 제정으로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에 대한 전자등록이 의무화(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 신설이 필요함</p>
<p>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p>	<p>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 사무처리 변경 내용 반영</p>
<p>제14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제14조 &lt;삭제&gt;</p>	<p>주식이 전자등록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 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p>

<p>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p> <p>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문구정비 : ‘월’ → ‘개월’</p>
<p>&lt;신설&gt;</p>	<p>제18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p> <p>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전자증권법 제정으로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하여 사실상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관에 관련 근거 신설</p>
<p>제18조의 2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p>제12조,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8조의 3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p> <p>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8조의2 신설 및 제14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p>
<p>제45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⑦ &lt;신설&gt;</p>	<p>제45조 (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사임·사망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추가</p> <p>상법 제542조의11 제4항</p>
<p>제46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p> <p>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p>	<p>제46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p> <p>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p>	<p>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감사인 선임 절차 변경</p> <p>외감법 제10조 제4항</p>

<p>제49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선임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p>	<p>제49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회사는 해당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개정 외감법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 변경(외감법 제10조 제4항) 통지/공고와 관련하여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수시로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정리</p>
<p>&lt;신설&gt;</p>	<p>부 칙 (2019.03.27)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구 정관(2019년 3월 27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의2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적용된다.</p>	<p>정관시행일 : 2019. 3. 27(예정) - 정기주주총회일 전자증권법 시행일이 2019년 9월로 예정됨에 따라 관련 정관 규정의 시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는 단서 신설</p>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신동빈	55.02.14	사내이사	임원	이사회
김교현	57.08.05	사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임병연	64.09.27	사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윤종민	60.11.28	기타비상무이사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박경희	55.03.23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	------	----	--------

			최근3년간 거래내역
신동빈	現. 롯데그룹 회장 現.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김교현	現.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前. LC타이탄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임병연	現. 롯데케미칼 기타비상무이사	前. 롯데지주 가치경영실장	해당사항 없음
윤종민	現.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장	前. 롯데지주 HR혁신실장	해당사항 없음
박경희	現. 롯데케미칼(주) 사외이사 現. 이화여자대학교경영학부교수(회계학)	前.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前. 이화여대 경영대학장 前.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경희	55.03.23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박경희	現. 롯데케미칼(주) 사외이사 現. 이화여자대학교경영학부교수(회계학)	前.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前. 이화여대 경영대학장 前.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9( 5 )	9( 5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390억원	441억원

※ 기타 참고사항

1) 이사의 수 : 상기 이사의 수는 등기이사의 수임

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등기이사 9명 및 비등기임원에 대한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임

